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509호

2024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 ‘2024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알림’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21.

서대문구청장

- 제 목 : 2024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4.10.21. ~ 2024.11. 4.
-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24.11. 4.
- 공시송달대상 : 총 1건

건축주	건축주주소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허가(신고)번호	처분내용	반송사유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000	대현동 37-52 의 4필지	2021-건축과-신축 허가-25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폐문부재

-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14조4항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임.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T. 02-330-1647)